
 <b>환경부</b> 	<b>보 도 자 료</b>		
	보도일시	2021년 <b>5월 18일 10:00 이후</b>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부 자원재활용과	서영태 과장 / 강지연 사무관 044-201-7380 / 7381
	배포일시	2021. 5. 18. / 총 5매	

##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...탈플라스틱 이끈다

- ◇ ‘자원재활용법’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- ◇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2년 출고·수입분부터 1kg당 313원 폐기물부담금 부과

□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’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,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\*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\* (高吸收性樹脂, Super Absorbent Polymer) 자기 체적의 50~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,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

□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\*에 ‘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’이 새롭게 추가되며,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\*\*으로,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.

\* 현행 품목(6종) : 살충제·유독물 용기, 부동액, 껌, 담배, 기저귀, 플라스틱제품

\*\* 수거·운반비용(168원/kg) + 소각·매립비용(145원/kg) (환경부 연구용역, '20.1)

○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(半製品)\*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,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.

\*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

○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·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,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.

□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,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·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.

\* (부과 전 단가)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05원/개,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/개  
→ (부과 후 단가)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99원/개,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/개

○ 최근 들어 냉동·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\*로,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·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.

\* '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2.1억 개로 추정('16년 대비 2배 증가)되며,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%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

○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,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%(22%p)로 대폭 감소했다.

○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(www.me.go.kr) 법령 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“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”이라면서,

○ “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·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·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.  
2. 신구조문대비표.  
3.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요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강지연 사무관(☎ 044-201-73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 배경 및 경과

- 고흡수성수지는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,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소요되며, 하수로 배출 시 하천으로 미세플라스틱 유출 초래
- 그러나,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가격에는 소각·매립 등 적정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\*, 친환경 소재 전환 또는 재사용을 유도하기 곤란

\* 아이스팩 판매단가(300g 기준) :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05원/개  
 친환경(물·전분) 아이스팩 128원/개

⇒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(313원/kg, 300g 기준 94원/개)하여, 그 근본적 감량과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

\* (부담금 부과 전) SAP 아이스팩 105원/개,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/개  
 → (부담금 부과 후) SAP 아이스팩 199원/개,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/개

□ 주요 내용

-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(안 제10조제1항제7호) 품목에 ‘고흡수성수지(高吸收性樹脂)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’ 추가

-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및 요율(안 별표 2 제7호 및 비고 제8호)

- (요율) 전체 중량 kg당 313원 부과

- (산출기준) 반제품\*(半製品)인 경우 최종 사용 시 무게 기준으로 부과하고,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未부과

\*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

현 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
<p>제10조(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)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·재료·용기”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6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0조(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) ①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다음 각 호의 제품·재료·용기를 말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7. <u>고흡수성수지(高吸收性樹脂, Super Absorbent Polymer)가 냉매(冷媒)로 들어있는 아이스팩</u></p>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</p> <p><b>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</b>(제11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품목 구분</th> <th>종류 및 규격</th> <th>요율 및 금액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6. (생 략)</td> <td>(생 략)</td> <td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><u>&lt;신 설&gt;</u></td> <td><u>&lt;신 설&gt;</u></td> <td><u>&lt;신 설&gt;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비고                      1. ~ 7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품목 구분	종류 및 규격	요율 및 금액 기준	1. ~ 6. (생 략)	(생 략)	(생 략)	<u>&lt;신 설&gt;</u>	<u>&lt;신 설&gt;</u>	<u>&lt;신 설&gt;</u>	<p>[별표 2]</p> <p><b>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</b>(제11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품목 구분</th> <th>종류 및 규격</th> <th>요율 및 금액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6. 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7. 아이스팩</td> <td><u>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</u></td> <td><u>전체 중량 kg당 313원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비고                      1. ~ 7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8. <u>위 표 제7호의 제품이 반제품인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,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</u></p>	품목 구분	종류 및 규격	요율 및 금액 기준	1. ~ 6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7. 아이스팩	<u>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</u>	<u>전체 중량 kg당 313원</u>
품목 구분	종류 및 규격	요율 및 금액 기준																	
1. ~ 6. (생 략)	(생 략)	(생 략)																	
<u>&lt;신 설&gt;</u>	<u>&lt;신 설&gt;</u>	<u>&lt;신 설&gt;</u>																	
품목 구분	종류 및 규격	요율 및 금액 기준																	
1. ~ 6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
7. 아이스팩	<u>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</u>	<u>전체 중량 kg당 313원</u>																	
<p>&lt; 부 칙 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1항제7호, (중략)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제7호,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아이스팩부터 적용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

□ 개 요

- (배경) ‘원인자부담원칙’에 따라 환경부하가 큰 제품에 대하여 환경비용을 부담시켜,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저탄소 생산을 촉진
  - (내용)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과
- ※ 근거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

□ 현행 대상품목 및 요율

품 목	종별 및 규격	부과요율	부과금액 (’20년 기준)
1.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(개)	○ 플라스틱 용기 - 500ml 이하 - 500ml 초과	24.9원 30.7원	385백만원
	○ 유리병 - 500ml 이하 - 500ml 초과	56.2원 84.3원	
	○ 금속캔 - 500ml 이하 - 500ml 초과	53.9원 78.2원	
2.	부동액(ℓ 당)	189.8원	4,523백만원
3.	껌(판매가/수입가)	1.8%	2,888백만원
4.	1회용 기저귀(개)	5.5원	18,154백만원
5.	담배(20개비)	24.4원	82,720백만원
6. 플라스틱제품 (합성수지투입 kg당)	○ 일반용	150원	90,571백만원
	○ 건축용	75원	
7. 아이스팩 (추 가)	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(kg)	313원	9,390백만원 (예상액)

※ 부담금 산정방식 : (전년도 제조 출고실적 혹은 당해연도 수입실적) × (품목별 요율) × (부담금산정지수)  
 ※ 부담금산정지수 :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,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